

정책세미나

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

본 자료는 2018년 4월 24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
『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』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CONTENTS

정책세미나

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

I. 개최 취지 5

II. 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6

발표자: 김원섭 (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)

1. 연금제도 다층화의 두 가지 접근 6
2.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특성 6
3. 복지국가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8

III. 공사연금 역할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10

발표자: 강성호 (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)

1. 고령사회 도래와 노인빈곤 10
2.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1
3.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12

IV. 토론내용 요약 15

1. 패널토론 15
 - 「최옥금」 (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팀 팀장) 15
 - 「정창률」 (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) 16
 - 「남재우」 (자본시장연구원 펀드·연금실 연구위원) 17
 - 「윤진호」 (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팀장) 17
2. 참석자 Q&A 18
 - 「권문일」 (한국연금학회 회장) 18

I. 개최 취지

-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화율(노인인구 비중)이 14%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함
 - 고령화율은 2026년 20%(초고령사회), 2038년 30%, 2058년 40%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(통계청 2017)
 -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여 생산여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임
- 그러나 사회·경제적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45.7%(2015년 기준)를 기록하고 있음
 - 주요 선진국의 노인빈곤율은 일본 19.0%, 미국 20.9%, 독일 9.5%임
- 100세 시대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노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으나, 노후에 대비한 복지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
 - 1998년과 2007년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부분적인 개혁에 그쳐 국민연금 기금소진이 2060년으로 예상되었으며,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더 단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- 이에 본 심포지엄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과 급여수준, 사적연금의 사각지대와 연금화 문제 등을 살펴보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적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II. 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

발표자: 김원섭 (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)

1. 연금제도 다층화의 두 가지 접근

■ 연금제도 다층화에 대한 시각은 복지다원주의와 복지국가형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함

- 복지다원주의 관점에서는 한 사회의 복지를 국가뿐 아니라 시장, 제3섹터, 비공식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의 총합으로 이해함
 - 이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이해를 넓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,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제도 등 연금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한계가 있음
 - 그 결과 사적연금이 발전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이 개선되지 않고, 소득불평등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함
- 복지국가형 관점하에서는 국가의 재정적·규제적 개입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책임 완수를 위해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을 활용하고자 함
 - 연금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제도 간 유기적 통합을 강조함

2.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특성

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으로 다층구조(0층: 기초연금, 1층: 국민연금, 2층: 퇴직연금, 3층: 개인연금)이나, 모든 제도가 부실한 상황임

- 국민연금이 기본적 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,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약 20만 원으로 기초보장 소득으로의 역할이 미흡함
 -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35%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, 수급액은 월 37만 원 수준으로 낮은 상태임
 - * 국민연금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30년이 되어야 65세 이상 인구의 50%가 수급하게 되어 수급률이 낮다고 할 수 있음

- 기초연금 20만 원도 급여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수급대상도 노인의 70%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공적연금의 기본적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
- 퇴직연금의 경우 2016년 기준 가입대상 근로자의 50%가 가입되어 있으며, 수급자 중 97%가 일시금으로 수급하고 있는 상황임
- 특히, 저소득층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낮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

■ 또한, 연금제도 목표가 서로 중복되고 있으며 급여제도 측면에서도 제도 간 유기적 통합이 부족함

- 연금제도 운영목적이 중복되어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 -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이 모두 빈곤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, 소득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비례부분과 퇴직연금이 비체계적으로 결합됨
 -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입·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
- 또한, 국민연금은 장기가입으로 급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될 우려가 있음
 - 현 실태를 보면,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40만 원의 급여를 받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 20만 원을 수급하도록 선택받고 있는 상황임

■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한 편은 아니지만,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합산한 총 보험료 수준은 이미 높은 편이라서 향후 보험료 상향을 추진함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

-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지출부담은 2020년에도 GDP의 3.3%로 OECD 평균인 9.8%에 비해 낮은 편임
-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계보험료는 17.3%(퇴직연금: 8.3%, 국민연금: 9%)로 상당히 높아 사업주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

표 II-1 공적연금 지출의 장기 전망

구분	2014~2017년	2020년	2040년
기초연금	39.6조 원	17.2조 원 *기초연금: 0.8%, 국민연금: 2.5% (GDP대비)	99.8조 원 *기초연금: 1.9% 국민연금: 6.5% (GDP대비)
OECD 평균		9.8%(GDP대비)	11.2%(GDP대비)

자료: 국민대타협기구(2015)

3. 복지국가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

■ 공적연금에 대한 기초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기초연금외 보충급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

-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급여수준 상향계획인 2018년 25만 원, 2021년 3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실현되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15% 수준임
 -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보충급여 제도(소득대체율 5%)를 도입하여 기초보장제도 (기초연금+보충급여)로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도 20%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■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축소하고 소득비례부분을 강화하여 퇴직연금과 함께 소득지위보장 중심의 급여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

-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총목표소득대체율을 65% 수준으로 하되, 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40%에서 30%로 10%p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향후 기초보장보다 소득지위보장 중심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되도록 함

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-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도록 하되,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되는 방식은 폐지될 필요가 있음
-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화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은 보충급여를 포함하여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 간 상호보완적 발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

■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

-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화를 조건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

- 이때 주로 자영업자, 비정규직 근로자,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
그림 II-1 복지국가형 다층연금체계 구축방향



자료: 국민대타협기구(2015)

Ⅲ. 공사연금 역할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

발표자: 강성호 (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)

1. 고령사회 도래와 노인빈곤

- 노인빈곤과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·확대되었고, 그 과정에서 급속한 복지재정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
-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3~4%에서 2014년 10.4%로 크게 증가함
*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비중은 18~19%에서 21%로 증가함

- 이에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나, 재정불안은 여전히 큰 상황임

- 2013년 3차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 기금소진시점이 2060년이었으나, 4차 재정계산 (2018년)에서는 기금소진시점이 당겨질 우려가 있음
* 김용하(2018), 국회예산정책처(2016) 등에서는 2055~2058년 소진을 추정함

- 선진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음

- 고령화사회(고령화율 14% 미만):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정책을 추진함
 - (적용대상 확대)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함
 - (수급 및 기여확대) 기초연금 도입, 수급대상 확대, 급여수준과 보험요율 인상
- 고령사회(고령화율 14% 이상):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함
 - 공적부문은 보험료 인상, 수령시기 연장 등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급여수준 축소 정책을 시행함
 - 사적부문은 세제혜택, 보조금 지원, 강제가입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임

- 재정문제, 사회·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적정노후소득 수준 달성을 위해 공사협력을 기반으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

- 적정노후소득 수준으로 70%의 소득대체율을 상정하면, 공적연금(국민+기초)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~35%(기초연금 10%)에 불과함

표 III-1 공사연금 역할분담 방향

구분	공적연금	사적연금
목표	제도 내실화, 재정안정 노력	적정노후소득보장, 맞춤형 소득보장
역할분담	법정소득대체율 40% 실현 점진적 보험요율 인상	목표소득대체율(70%) 실현 지원 소득계층별 적정 소득보장
대상	저소득층 중심	중산층 중심(소득활동 저소득층 확대)

2.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

- 가입 및 유지, 자산운용, 급여수급, 세제지원, 제도 간 연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

- 사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취약하며,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인출 허용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한계가 존재함

- 2016년 기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도입률은 각각 50.0%와 12.9%에 불과하며, 특히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음
- 퇴직연금 가입자 중 대부분이 주택구입(45.7%), 임차보증금(18.1%) 등 주거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중도인출을 하고 있는 상황임

-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91.6%가 원리금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2017년 기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1.88%에 불과함

- 2012~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2.6%로 OECD 평균인 9.9%에 비해 7.3%p 낮음

-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며, 개인연금 또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중도 높지 않은 등 전체적으로 연금화 전환이 미흡한 실정임
 - 2017년 중 퇴직급여 대상자 중 일시금을 선택한 비율은 98.1%에 달하며,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형태 수령이 57.3%이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.4년에 불과함
-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15.7%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지원수준(21.5%)에 비해 낮고, 소득기준 외 사업장 및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세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
 - 사업장 규모, 가입자 직업 특성(영세사업자, 주부 등)을 반영하지 않는 연금세제로 운영되어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도입 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존재함
- 적정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목표수준이 설정되어있지 않고,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공사연금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함
 - 선진국의 경우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은 기본적 보장, 사적연금은 적정 보장수단으로 제도연계성을 제고한 반면, 우리나라는 제도 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공사연금 간 노후소득 보장 목표가 모호한 상황임

3.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

- 공적연금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사적연금은 다음과 같이 가입·유지, 자산운용, 급여수급, 세제지원, 관리감독 등 5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
표 III-2 사적연금의 현황과 개선 방향

구분	현황	개선방향
가입·유지	→ 낮은 가입율과 유지율	퇴직연금 가입의무화, 제도연속성(통산장치) 강화
자산운용	→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	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
급여수급	→ 일시금 위주 수령	연금전환을 통한 급여의 보편성 달성
세제지원	→ 연금세제지원 취약	세제지원 강화 등 정책적 지원
급여수급	→ 공사연금제도 종합관리 부재	공사연금의 종합관리·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

■ 첫째,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되, 가입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

-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시행 과정에서 Opt-Out* 방식의 자동가입제도 (Auto-Enrollment) 도입을 통해 의무화에 따른 반감을 완화하면서 가입의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

* 가입은 자동으로 되나 가입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가 가능한 방식임

- 일본의 개인형 DC연금제도(우리나라의 IRP와 유사)를 참고하여 IRP 가입대상에 전업주부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
■ 또한, 제도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규제 마련과 더불어,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됨

- 사망, 영구장애 등 심각한 재무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함
- 퇴직금 가입자에게도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이직과정에서 해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

■ 둘째, 자산운용시스템의 효율화 등 자산운용 여건 개선과 더불어, 제도 및 투자교육 강화를 통한 제도 인식 제고가 필요함

- 투자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디폴트옵션 도입 등을 통한 자산운용시스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- 수익률 제고 및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자·소비자 대상 투자교육을 강화해야 함

■ 셋째, 연금수령 연령 조정, 연금지급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연금화 전환을 유도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
- 영국의 소득인출형제,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한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선호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
- 연금 수령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에서 2015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자동연금수급*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*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제도화함

■ **넷째, 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가입을 유도하되,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**

-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혜택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국가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다소 높일 필요가 있음
 - 특히, 현재 700만 원으로 설정된 세액공제 대상액을 상향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(예: 고소득자의 공제대상액은 축소)할 필요가 있음
- 독일의 리스터연금, 미국이나 호주의 Catch-Up Plan 등과 같이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하고,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원방안을 마련해야 함
- 퇴직소득공제가 다소 높아 연금화 유인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공제를 줄이되,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조세재원을 연금화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■ **다섯째, 공사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·감독할 컨트롤타워(예: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)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**

-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,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,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
- 따라서, 부처 간 이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인 총리실 산하에 공사연금제도 관련 전담조직(컨트롤타워)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

IV. 토론내용 요약

1. 패널토론

「최옥금」(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팀 팀장)

-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“현 노후 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?”임
 - 그 과정에서 향후 국민연금이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
-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에 있으며, 기초연금 급여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상충될 우려가 존재함
 - 노인의 70%만을 수급자로 하고 있어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기초연금의 대상자에 속하게 될 지 여부가 불확실함
 -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는 구조이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고려할 때 향후 본인이 어느 정도 노후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함
- 따라서 다층노후소득보장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 중심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
 - 국내 노동시장 상황이나 재정문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의 기본적 노후생활 보장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
- 발제자(김원섭 교수)는 새로운 보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, 그보다는 해당 재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해서 크레딧(Credit) 또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

-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역할이 불명확하거나 통합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임
-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제도 간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

「정창률」 (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)

- 우리나라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또는 공사연금 역할분담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고,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
 -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, 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사실상 퇴직연금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사연금 역할분담이 원활하지 못함을 방증함
- 발제자(김원섭 교수)께서 제시한 모형에서 공적연금은 캐나다 모형을 사적연금은 독일식을 일부 감안한 방식이나, 캐나다 방식의 경우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존재함
 - 또한, 발제자가 주장한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기초로 한 보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됨
 - 즉,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저소득층은 공적보장(1층)을 통한 소득보전을 우선시 하여야 하며, 불가피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
-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핵심은 2층보장인 퇴직연금을 어떻게 공적 목적을 위해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음
 - 서구의 연금개혁 과정을 보면, 인구고령화에 취약한 부과방식을 줄이고 적립방식을 늘리되 사적연금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였음
 - 영국은 연금수수료 체계 정비, 수급권 보장, 연금수령 의무화 등의 규제를 시행함
-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보편적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함께 강제화 또는 준강제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

「남재우」(자본시장연구원 펀드·연금실 연구위원)

-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, 대부분의 연금자산 운용이 안정성을 강조하여 보수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,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은 문제가 존재함
- 연금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, 그 위험 중 어떤 것은 감내할 수 있으며,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(궁극적 위험)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함
 - 일정시점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연금자산운용에서 과연 실질적 위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
- 국민연금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재정추계 과정에서 기금운영의 방향과 목표가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임
 -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재정재계산 과정에서 ① 재정방식의 확정, ② 확정된 재정방식하에서의 적정한 재정지표 설정, ③ 이에 따른 요구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도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- 한편,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 중인 디폴트 옵션제도,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 등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
「윤진호」(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팀장)

- 퇴직연금 연금화를 위해서는 연금적립액 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IRP 중도해지 제한,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
 - 첫째, 현재 이직·퇴직 시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, IRP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상황임
 - 둘째,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중도인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고,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 총당 목적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

○ 셋째, 퇴직금의 경우에도 IRP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

- 한편,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① 벤치마크 수익률 설정, ② 장기적 운용 스케줄을 고려한 연금전용펀드 출시 및 활성화, ③ 단기수익률을 제시하는 영업 관행에서 장기수익률 경쟁의 유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2. 참석자 Q&A

「권문일」 (한국연금학회 회장)

-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금지, 연금화 유도, IRP 해지 금지 등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‘노후소득보장제도’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

○ 현재 다수가 퇴직연금제도는 실업이나 조기퇴직으로 인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

-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등의 규제를 엄격히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, 현행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업 시 사회안전망의 역할, 생활안정자금 지원,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

정책세미나

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

발행일 | 2018년 5월

발행인 | 한기정

발행처 | 보험연구원

주 소 |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(여의도동 35-4)

연락처 | 02-3775-9000

인쇄처 | 경성문화사 / 02-786-2999

Copyright@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. All Rights Reserved.

